

제 467호

1974.11.14.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 자 순

편집 : 문화공보실장 조 용 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892 호 :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선차 조례 제지 조례	3
제 893 호 : 서울특별시 립부녀 보호 지도 소실치 조례 증개정 조례 ...	3
제 894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 조례 증개정 조례	4

◎ 규 칙

제 1406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점비 착지 제증개정규칙	5
제 1407 호 : 서울특별시 임시 고용원 규정 증개정규칙	6
제 1408 호 : 서울특별시 경찰서 조직규칙 증개정규칙	6
제 1409 호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증개정규칙	7
제 1410 호 :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 조례 시행규칙 증개정규칙	9

◎ 훈 령

제 391 호 : 서울특별시 구출장소 위임전결 규정 개정	11
---------------------------------------	----

◎ 고 시

제 170 호 : 서울도시 계획 용도 지역 지적 승인	13
제 171 호 : 연탄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상 고

제 241 호 : 제 14 회 을 중 위험 물 취급 주입 면허 시험

합격자 발표 14

○사 령 19

○위 보

동사무소 이전 20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892 호

서울특별시운수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440 호 (1966.5.28)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4년 11월 2일부터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립부녀보호지도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74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893 호

서울특별시시립부녀보호
지도소설치조례

제 1조 (목적) 무의무탁한 부녀 기타의 요보호여성 (이하 "총우여성"이라 한다)의 수용보호와 자립생활지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 (이하 "보호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제 2조 (명칭 및 위치) 보호지도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 3조 (적용) 보호지도소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총우여성의 수용보호
2. 수용자의 건강관리
3. 수용자의 교양지도
4. 수용자의 기술교육
5. 수용자의 취업계획 및 직업알선
6. 기타 수용자의 자립을 위한 사항

제 4조 (공무원) ① 보호지도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3급공무원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보호지도소의 업무를 장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보호지도소에 소장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조 (위탁직로비등) 소장은 직소

<p>자에 대한 치료기관에의 위탁진료비 및 퇴소하는자에 대한 퇴소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p> <p>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별표) 보호지도소의 명칭 및 위치</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폐지조례) 1972.5.15 서울특별시조례제 705호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명 칭</p> <p>서울특별시립동부부녀보호지도소 서울특별시립남부부녀보호지도소</p>	<p>위 치</p> <p>서울특별시성동구수서동산 4번지 서울특별시관악구대방동 345번지</p>
<p>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1974년 11월 14일</p> <p>서울특별시장 구 자 춘 인</p> <p>◎ 서울특별시조례제 894 호</p> <p>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중 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2 조 제 2 항 단서중 "정기여객운임" 다음에 "및 군인여객운임" 을 삽입한다.</p>	<p>제 10 조의 2 를 다음과같이 신설한다.</p> <p>제 10 조의 2 (승차권의 위탁판매) ① 시장은 승차권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승차권의 종류 기타 승차권의 위탁판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p> <p>③ 시장은 전 2 항에 의하여 승차권을 위탁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창직제증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74. 11. 13

서울특별시장 구 자 준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1406 호

서울특별시자동차정비창식제증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창직제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5 조 중 제 1 항 및 제 2 항제 1 호 카복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부칙에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 6 조를 삭제하고 제 7 조 제 1 항중 "관리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한다.

제 4 조 (기술담당관) ①정비창에 기술담당관 1인을 두고 기술담당관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 기술담당관은 정비창내의 자동차정비업무에 관하여 기술사무를 총괄조정하며 소장을 보좌한다.

제 5 조 (사무분장) ① 정비창에는 관리제, 정리제 및 정비계물 두고 관리제장과 정리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정비제장은 지방기계기사로 보한다.

②

1.

카. 기타 다른제의 주관역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정비제

가. 차량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및 차량정비업무

나. 차량정비수수료의 결정 및 징수결의

다. 정비요원의 기술훈련

라. 정비용공구 및 부분품의 유지관리와 구매발의 검수

마. 정비차량의 출입고확인및검사

바. 정비차량의 검사대행

사. 정비점검

야. 검사수수료의 결정및 징수결의

자. 기타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규정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74. 11. 13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 규칙제 1407 호

서울특별시임시고용원
규정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임시고용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13 등급직종란에 '행정보
조원 소독수'를, 14 등급직종란에
'경비원'을, 17 등급직종란에 '감
시원'을, 18 등급직종란에 '청원경
찰'을, 21 등급 및 38 등급직종란
에 각각 '교습원'을 35 등급, 43
등급 및 54 등급직종란에 각각 '행
정보조원'을 각각 신설하고, 62 등
급 및 63 등급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62 123,000 의사

63 154,000 의사

부 칙

이 규칙은 1974년 8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서울특별시 경찰서조직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74. 11. 14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인

◎서울특별시 규칙제 1408 호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
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경찰서조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서울노랑진경찰서란중 '신
동파출소'란 및 남성파출소 관할구
역중 '성동구반포동 200-612'를 각
각 삭제하고, 서울동부경찰서란중 신
양파출소, 청담파출소, 도곡파출소 및
신사파출소 관할구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서울동부경찰서란에 신동
파출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양파출소 삼성동 1-3, 5, 7-11, 13-
17, 자양동(재 326-435, 437-
443, 446-448, 451-480, 482-484,
497-527, 531-553) 신천동,
잠실동, 구의동 204의 1-2, 250의
1-3, 205의 56, 216의 1-26,
218의 3-17, 219의 1-21, 220의 1-268,

<p>221 의 1 - 17, 222 의 1-9, 223 의 1-21 , 224 의 1-18 , 225 의 1-40, 226 의 1-26, 228 의 1-47, 228 의 56-58, 228 의 126-130, 229 의 1-25, 230 의 1-24, 231 의 1-46 , 232 의 1- 56 , 233 의 1-19, 234 의 1-14 235 의 1 - 15, 236 의 1-23, 237 의 1-27, 238 의 1 , 239 의 1-115 , 240 의 1-36, 241 의 1- 28, 246 의 1-20 , 248 의 1-27, 249 의 1-6, 250 의 17-21, 251 의 12-41, 252 의 1-27, 253 의 1-23 254 의 1-73, 257 의 8-47</p>	<p>113 구획, 양구정동 영동 2 지구 1-3, 10-13, 32, 33, 42, 43, 47, 49 구획, 계포동, 대치동 도곡파출소 : 역삼동 영동 1 지구 22-24 27-32, 35, 40, 43-45 구획, 영동 2 지구 627-647 , 650, 651, 658, 659, 661-664, 696-716 구획, 도곡동영동 2 지구 674, 679-682, 684, 708-712, 714-717, 719 729-744 구획, 삼성동 영동 2 지구 647-649, 653, 654, 656, 657, 665, 666, 668-673 구획, 서초동(세 영동 1 지구 64-73, 308, 335-343, 347 구획) 반포동(세 영동 1 지구 1-15, 17- 44, 73-94, 143, 144, 151- 186, 236- 256, 257, 267, 270-306 구획)</p>
<p>청담파출소 : 청담동(세 영동 2 지구 1024, 1025 구획) 삼성동(세 영동 2 지구 512-516, 518, 519, 589, 594, 597, 600-618, 621-626, 647-649, 653, 656, 657, 665, 666, 668-673, 684, 1085, 1090, 1091 구획, 구지번 1 - 3, 5, 7- 11, 13-17) 도곡동 영동 2 지구 388, 390-393, 398-401, 404, 407, 413-418, 437- 439, 448, 학동 영동 2 지구 54- 67, 70-75, 83, 86, 96, 103-105,</p>	<p>신사파출소 : 신사동, 잠원동, 논현동, 반포동 영동 1 지구 1-15, 17-44 73-94, 143, 144, 151-186,</p>

<p>236-256, 258-267, 270-306 구획.</p> <p>서초동영동 1 지구 64-73, 308, 335-343, 347 구획.</p> <p>역삼동영동 1 지구 47-60 구획. 영동 2 지구 533-538, 540, 545-549, 551 - 559, 562-571, 590 - 593, 598-599 구획,</p> <p>삼성동 영동 2 지구 512-516, 518, 519, 589, 594-597, 600 -618, 621-626, 1085, 1090</p>	<p>1091 구획.</p> <p>청담동 영동 2 지구 1024, 1025 구획.</p> <p>학동 (제 영동 2 지구 54-67, 70 75, 83, 86, 96, 103-105, 113구획)</p> <p>안구정동 (제 영동 2 지구 1-3, 10 - 13, 32, 33, 42, 43, 47 - 49 구획)</p>
---	---

서 별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신문 파출소	성동구양재동9	양재동, 우면동, 포이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 동, 서초동 영동 1 지구 13-20 구획, 4 구획 1호, 5 구획 1호 - 5호. 역삼동 영동 2 지구 695, 705, 745 - 754 구획, 도곡동 (제 388, 390 - 393, 398, 401, 404, 407, 413 - 418, 437 - 439, 448, 674, 679-682, 684, 708 -712, 714 717, 719, 729-744 구획
부 칙			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			

<p>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1974. 11. 13</p> <p>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p> <p>◎서울특별시규칙제 1409호</p> <p>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중 인사과란에 제 2 호 내지 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부 칙</p> <p>이규칙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	--

<p>2. 4급이하공무원의 공개 채용시험, 특별채용시험, 승진시험 전직시험에 관한 사항</p>	<p>내부위임</p>	<p>공무원교육부장</p>	<p>지방공무원법 제 32 조제 1항, 제 2항</p>
<p>3. 인사위원회운영(시험실시에관한)</p>	<p>"</p>	<p>"</p>	<p>지방공무원법제 7조</p>
<p>4. 기타공무원의 시험</p>	<p>"</p>	<p>"</p>	<p></p>

<p>서울특별시 지하철운임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1974.11.14</p> <p>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p> <p>◎서울특별시규칙제 1410호</p> <p>서울특별시지하철운임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p> <p>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임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1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 17 조의 2 (군인군속 여객운임할인증</p> <p>①군인, 군속이 할인보통 승차권과 구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 군인 군속 여객운임 할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할인증은 국방부 및 각급 본부에서 발행한것에 한한다.</p> <p>제 17 조의 3 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p>
---	---

제 17 조의 3 (군인군속활인, 보통승차권 발매) 군인군속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임할인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할인보통승차권을 발매한다. 다만, 자선구간은 할인증 대신 정복군인 (장교제외) 에 한하여 군인할인 보통승차권을 발매한다.

제 33 조의 2 붙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3 조의 2 (군인군속에 대한 여객운임할인) 제 17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군속에 대한 할인보통승

차권을 발매할 때에는 대인보통여객운임의 5 할을 감하여 단수 처리한 액으로 한다. 다만, 국유철도와 연락운송을 하는 경우의 최저 운임은 할인의 유무에 불구하고 기본요금으로 한다.

제 44 조 중 "승차권면" 다음에 "(보통정기승차권제외)" 을 삽입한다.

별지 제 5 호 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5 호 시식 "

(앞면)

← 7 cm →

	제 호	<u>군인군속여객운임할인증</u>			
	소속				
	제급	성명			
	승차구간	역에서	역까지		
			1 197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직인		
			참 모 총 장 직인		
			발행 담당관 인		
	발행일	년 월 일			승차권번호

* 발행담당관은 각 부대장으로 한다.

붙임

1. 이 증은 군인군속이 여행하는 경우 승차권의 환인을 받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여행중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 직원의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이 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이 증의 기입사항을 정정하였을 때에는 상당증인이 있는 것 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4. 이 증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 간으로 한다.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 391 호

서울특별시구술장소위임전결규정개정

서울특별시 구술장소 위임전결규정개정 규정 중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구 및 출장소 위임전결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4년 11월 15일

제 14 조 (주석과) 세무사항항 제 2 호 제 15 호 및 제 16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자 훈 령 인

계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제 권 자					첨 소 처
			구 정 장 (출장소장)	부 청 장	과 장	계 장	담 당 자	
주 택 단 속	단 속	2. 건축물의 수인허가 15. 무허가건물의 철거 (사유지상무허가건물 철거포함) 16. 무허가건물철거제 고서 발부	○					
			○					
			○					

제 15 조 (토목과) 세부사항중 제 3 조 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호, 제 17 호 및 제 18 호를 각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계 권 자				협조처	
			구 청 장 (출장소장)	부 청 장	과 장	계 장		담 당 자
관 리		3. 도시계획법 제 4 조 에 의한 공작물축조 허가 12. 도시계획법 제 4 조 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17. 설계변경 및 승인 ○ 중요사항 ○ 기타사항 18. 공사연기신청의 처 리	○					

제 16 조 (건축과) 세부사항중 제 1 호, 같이 한다.
제 5 호 및 제 7 호를 각각 다음과

제 별	단위업무	세 부 사 항	결 계 권 자				협조처	
			구 청 장 (출장소장)	부 청 장	과 장	계 장		담 당 자
건 축 1. 2	민 원	1. 건축허가신청처리 ○ 3 층이상및 특수건물 ○ 전항이외의 허가신 청처리 5. 건축주명의 변경신청 의 처리 7. 준공검사의 처리 ○ 3 층이상및 특수건축물 ○ 전항이외의 허가신 청처리	○		○		○	

부 칙 적용한다.
이 규정은 1974년 11월 11일부터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0 호

서울도시계획용도지역지적승인

- 1. 건설부고시 제 356 호 (74.11.2) 로 일부변경 결정코시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가. 도시계획용도지역 지적승인조서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11.14

서울특별시 장

- 첨부: 1. 도면생략
- 2. 지적승인조서 (도면표시와 같음)

단위: 평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준공업지역	성동구광장동 445 번지부근	38.378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연탄에 대한 최고가격지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 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른 상공부고시 제 10550 호 (74.10.10) 에 의거 서울

특별시 지역 연탄 (2 호탄) 의 판매소 도와 가정도의 최고가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974.11.14

서울특별시 장

다 음

가. 연탄의 최고가격

단위: 원

탄 동	최 고 가 격		비 고
	판 매 소 도	가 정 도	
2 호탄 (3.6)	26.80	30.00	

나. 기 간: 고시한 날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이 고시는 1974.11.14 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241 호

제 14 회 을중위험물취급주입
면허 시험 합격자 발표

1974.11.17 실시한 서울특별시

제 14 회 을중위험물 취급주입 면허
시험 합격자를 다음 장소에 게시
발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장 소

- 가. 서울특별시청 후정 게시관
- 나. 중부소방서 게시관
- 다. 성동소방서 게시관
- 라. 용산소방서 게시관
- 마. 영등포소방서 게시관

2. 게시일시

1974. 11. 19 10:00

1974.11.18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시행 제 14 회 을중 위험물취급주입면허시험합격자

제 1 류 : 1 . 2 . 3 . 4 . 6 . 7 . 8 . 10 . 11 (9 명)

제 2 류 : 1 . 2 . 5 . 6 . 7 (5 명)

제 3 류 : 1 . 2 . 4 . 6 . 7 . 8 . 9 (7 명)

제 5 류 : 1 . 2 . 3 . 5 (4 명)

제 6 류 : 1 . 3 . 5 . 6 . 8 . 9 . 10 . 14 . 15 . 15 . 17 . 18 . 19 (13 명)

제 4 류 : (990 명)

2	10	20	26	42	48	53	60	71	75
5	11	21	36	45	49	55	61	72	76
6	18	22	40	46	50	56	65	73	80
8	19	25	41	47	52	57	69	74	82

	제 467 호			시			보			1974.11.20 30-15	
83	118	169	235	246	299	337	378	418	463	513	542
84	121	173	238	247	302	338	380	420	465	512	546
86	122	175	219	248	303	340	381	422	467	513	547
87	124	176	220	249	305	341	382	424	468	514	548
88	126	177	221	250	308	342	383	425	469	516	549
89	127	179	222	259	307	348	385	426	471	517	550
90	128	180	223	260	313	350	386	427	474	520	551
92	130	181	225	261	316	351	388	429	476	521	553
93	131	187	226	264	318	354	391	430	478	524	
95	133	189	227	265	321	355	392	435	479	525	
96	137	196	228	266	322	358	395	436	483	526	
97	138	198	229	267	324	359	397	442	484	527	
99	142	199	231	271	325		399	443	486	528	
100	148	200	232	272	326	360	401	444	488	529	
101	150	204	235	275	327	366	402	446	490	533	
103	154	205	236	280	328	367	403	447	492	534	
105	155	208	237	292	329	368	404	451	493	535	
106	156	209	239	294	332	371	406	452	494	536	
107	160	210	240	295	333	373	408	453	502	537	
108	163	211	241	296	334	374	409	456	503	539	
109	165	212	242	297	335	375	415	459	505	540	
			243								
111	168	214	245	298	336	376	416	461	509	541	

20-16 제 467 호

시

보

1974.11.20

557	604	659	721	781	831	881	921	969	1025	1061	1108
563	607	660	725	784	832	886	923	972	1027	1062	1109
564	611	661	726	785	834	887	924	974	1028	1063	1112
565	613	662	727	790	836	888	925	981	1029	1064	1115
567	615	663	729	794	838	889	926	984	1031	1065	1116
570	616	669	730	796	839	890	927	994	1032	1067	1119
571	619	672	733	798	844	892	928	996	1036	1068	1122
572	620	675	739	799	848	893	930	997	1037	1069	1126
575	624	677	742	802	849	894	932	1000	1039	1070	1127
581	627	678	743	803	851	895	933	1002	1042	1072	1129
582	631	681	745	804	855	896	935	1003	1043	1075	1131
583	634	685	746	805	856	900	936	1004	1047	1078	1132
584	635	686	749	807	859	902	938	1005	1048	1079	1133
585	643	688	750	808	863	903	941	1008	1049	1080	1135
587	644	689	752	811	865	904	946	1010	1051	1083	1137
592	647	694	757	813	867	905	950	1011	1052	1089	1139
595	648	706	762	815	869	906	954	1013	1053	1091	1143
597	654	711	763	816	872	910	956	1014	1054	1092	1146
598	655	716	766	819	873	913	961	1018	1055	1094	1148
599	656	718	773	827	874	914	963	1019	1058	1102	1155
600	657	719	776	829	879	917	967	1021	1059	1103	1156
601	658	720	780	830	880	918	968	1024	1060	1105	1157

1159	1212	1257	1309	1361	1414	1479	1520	1560	1602	1650	1702
1164	1213	1258	1310	1362	1415	1482	1521	1565	1604	1652	1703
1165	1215	1261	1314	1365	1419	1483	1522	1566	1607	1654	1704
1166	1221	1262	1320	1368	1422	1484	1524	1568	1608	1656	1705
1167	1222	1263	1324	1369	1427	1486	1525	1571	1613	1657	1706
1173	1227	1265	1330	1373	1429	1489	1528	1572	1614	1660	1708
1176	1229	1268	1331	1374	1433	1490	1530	1573	1616	1662	1709
1177	1230	1269	1333	1375	1436	1491	1534	1574	1618	1664	1710
1178	1233	1270	1334	1376	1437	1492	1536	1576	1619	1665	1711
1183	1236	1277	1336	1377	1439	1493	1537	1577	1620	1666	1712
1184	1238	1279	1339	1378	1441	1500	1538	1578	1621	1667	1713
1187	1239	1280	1340	1381	1445	1502	1539	1580	1623	1675	1714
1194	1240	1285	1341	1382	1450	1503	1541	1581	1624	1677	1715
1199	1243	1294	1342	1384	1462	1504	1544	1582	1625	1681	1716
1200	1244	1296	1346	1390	1464	1506	1546	1583	1627	1682	1717
1202	1246	1298	1350	1395	1465	1507	1547	1585	1628	1683	1718
1204	1249	1299	1351	1398	1467	1509	1548	1586	1629	1684	1719
1206	1250	1300	1355	1401	1468	1511	1549	1587	1630	1685	1720
1207	1252	1302	1356	1402	1469	1516	1550	1597	1632	1686	1721
1208	1253	1303	1357	1403	1470	1517	1553	1598	1633	1687	1722
1209	1254	1306	1359	1409	1472	1518	1556	1599	1634	1688	1723
1211	1256	1307	1360	1413	1475	1519	1559	1600	1635	1689	1724

20-18 제 467 호

시

보

1974.11.20

1743	1765	1794	1828	1867	1902	1961	1989	2013	2039
1744	1766	1795	1829	1868	1903	1962	1990	2014	2040
1746	1767	1796	1830	1871	1905	1966	1991	2015	2048
1747	1768	1797	1831	1872	1910	1967	1993	2016	2049
1748	1769	1798	1835	1873	1912	1969	1974	2017	2050
1749	1770	1800	1836	1874		1972	1995	2018	2053
1750	1772	1802	1838	1875	1913	1973	1996	2019	2054
1751	1775	1803	1841	1878	1914	1974	1999	2020	1934
1752	1777	1807	1843	1879	1916	1975	2000	2021	1935
1755	1778	1812	1844	1881	1918	1978	2002	2022	1940
1756	1781	1814	1845	1885	1923	1979	2003	2023	1942
1757	1783	1815	1849	1886	1926	1980	2005	2024	1943
1758	1785	1816	1852	1891	1928	1981	2007	2025	1944
1759	1787	1819	1855	1892	1929	1982	2009	2027	1946
1760	1788	1822	1864	1893	1933	1983	2010	2030	1949
1762	1791	1823	1865	1895	1954	1986	2011	2032	1951
1764	1793	1826	1866	1896	1956	1987	2012	2033	1952
								2036	1953

사 령

◎ 1972.11.12

시 민 과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김 정 희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시 민 과 근무를 명함.

시 민 과 지방행정
서기보시보 공 정 순
지방행정서기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시 민 과 근무를 명함.

아 동 과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최.임 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아 동 과 근무를 명함.

◎ 1974.11.15

내 무 국 서기관 국 용 호
행정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성북구청장 직무대리를 명함.

동 대 문 구 지방건축과 강 태 심
(건축과장) 기 관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동 대 문 구 지방행정 윤 형 국
보 건 소 사 무 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기획조정실 서 기 관 최 상 근
서울특별시 건설국시설관리과장에 보함.

지 하 철 본 부 서 기 관 이 흥 순
경 려 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결승을 명함.

종 로 구 청 장 부이사관 이 동 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 보함.

용 산 구 청 장 부이사관 도 지 훈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 보함.

도 봉 구 청 장 구이사관 박 동 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 보함.

성 북 구 청 장 부이사관 김 닉 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 보함.

동 대 문 구 청 장 부이사관 손 영 한
국가공무원법 제 73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1974.11.15.

대 봉 령

◎ 1974.11.16

하 수 과 지방토목 김 호 정
기 원 보
부직을 명함.

동 대 문 구 근무를 명함.

<p>시 민 과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이 영 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시민과 근무를 명함. 부 녀 과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신 연 회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부녀과 근무를 명함.</p>	<p>용 산 구 지방행정기 김 용 신 연료과 파견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지방행정 정 구 현 주사보 운수 2 과파견 (74.11.18- 75.1.18 까지) 근무를 명함.</p>										
<p>◎1974.11.18 성 북 구 지방행정 주사보 김 건 태 정 신 병원 지방행정 주사보 정 찬 원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안 영 익 관 악 구 지방행정 주사보 지 만 수 연료과 파견근무를 명함.</p>	<p>◎1974.11.20 성 북 구 지방행정 주사 권 오 호 인사과 근무를 명함. 지하철본부 지방행정 주사 현 재 호 하수과 근무를 명함. 천호출장소 지방행정 주사보 박 정 노 주택행정과 근무를 명함. 임 선 과 지방도 주사 김 창 영 시민회관 점무를 명함.</p>										
<p>서 울 특 별 시 장</p>											
<p>회 보</p>	<p>동사무소를 이전하였기 알려드립니다.</p>										
<p>동청사 신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p>	<p>1974.11.18.</p>										
<p>다 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5%;">동 명</th> <th style="width: 35%;">건 소 재 지</th> <th style="width: 35%;">이 전 장 소</th> <th style="width: 15%;">이전일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미아제 10 동 번</td> <td>도봉구미아동 304-8</td> <td>도봉구미아동 197-1</td> <td>74.11.16</td> </tr> <tr> <td>도봉구번동 306-2</td> <td>도봉구번동 464-49</td> <td>74.11.18</td> </tr> </tbody> </table>	동 명	건 소 재 지	이 전 장 소	이전일자	미아제 10 동 번	도봉구미아동 304-8	도봉구미아동 197-1	74.11.16	도봉구번동 306-2	도봉구번동 464-49	74.11.18
동 명	건 소 재 지	이 전 장 소	이전일자								
미아제 10 동 번	도봉구미아동 304-8	도봉구미아동 197-1	74.11.16								
	도봉구번동 306-2	도봉구번동 464-49	74.11.18								
<p>도 봉 구 청 장</p>	<p>김 백 수</p>										